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 1월 31일까지 연장

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안내

적용기간 : 2021년 1월 18일(월) 0시 ~ 2021년 1월 31일(일) 24시, 2주간 적용

○ **(단계 조정) 겨울철의 전파력**이 크고, 방역 이완 시 **유행 재확산 위험성**이 있는 점을 고려, 현행 **거리두기 단계**(수도권 2.5·비수도권 2단계)를 **2주간 연장**

*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제한(수도권), 50인 이상(수도권), 100인 이상(비수도권) 모임·행사 금지 등 유지

○ **(사적모임/고위험시설)** 현재 유행의 **주요 원인**인 **개인 간 접촉**을 **최소화**하고, **요양병원·교회 등 고위험시설**에 대한 방역 관리는 **계속 강화**

*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,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, 요양병원 선제검사 등 유지

○ **(다중이용시설)** 시설의 집단감염 감소,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**집합금지 시설**을 **방역 수칙 준수** 하에 **제한적으로 운영 허용**

- **8**㎡ 당 **1**명 이용 인원 제한*을 기준으로 운영 개시, 이후 상황 호전 시 **4**㎡ 당 **1**명(2단계 기준)으로 인원 확대 등 검토

  * 방역적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(4㎡당 1명)의 2배 적용

- 이용인원을 출입문 등에 사전 게시 의무화,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강화

거리두기 조정 방안

1. 거리두기 단계 유지

○ **(단계) 수도권 2.5단계 + 비수도권 2단계**

○ **(기간) 1.18~1.31, 2주간 적용**

○ **주요 내용**

- **(**수도권**)** 결혼식·기념식 등 **50**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, 다중이용시설 **21**시 이후 운영 제한, 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
- **(**비수도권**) 100**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,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 제한, 스포츠 경기 **10%** 이내로 관중 입장 등

2.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및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

□ 모임 제한(전국)

○ **(사적 모임)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**

- 다중이용시설(예: 식당)에 **5**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

□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(전국)

○ **(요양·정신병원 등) 선제적 검사 확대, 현장대응팀 구성·파견, 전담요양병원 지정하여 신속한 전원 조치 실시**

<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주요 내용(1.3)>

- ▸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 1주 2회로 단축(1.11~)
- ▸긴급현장대응팀(중수본, 방대본, 국립중앙의료원, 전문가 등) 구성하여 감염 초기 대응 지원
- ▸환자 발생 규모 및 유형에 맞추어 신속한 전원 조치 실시, 돌봄 인력 확보
- - 병상 확보 위해 일반요양병원 및 전담요양병원 조속 지정

○ **(교정시설) 전국 교정시설 직원 주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, 수용자 접견·교육 등 제한**

○ **(종교시설) 단계 기준**에 따라 **수도권은 비대면 유지**(2.5단계 수칙), **비수도권**은 **좌석의 20%**까지 **대면 허용**(2단계 수칙)

-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·수련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의무화 또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점검 강화

  * 인원 제한, 통성기도 금지 등 의무화 또는 집합금지 검토(교계와 협의)

- 부흥회, 성경공부 모임, 구역예배, 심방 등 모든 모임·식사 금지

□ 파티·여행 등 제한(전국)

○ **(파티)** 모임·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**'파티룸'**은 **집합금지**

○ **(숙박시설)**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농어촌민박 등 **숙박시설**은 **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제한,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**

*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
3. 집합금지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조정

□ 방향성

○ 다중이용시설의 **집합금지**는 **해제**하되, **시설 면적 8㎡당 1명***을 기준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,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인원 확대

* 2단계에서의 시설 면적 4㎡당 1명보다 강한 기준

○ 협회·단체와 **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**하며, 업종 간 **형평성 문제**를 **해소**하기 위해 **시설별 방역 수칙**을 보다 **세분화**하여 **보완**

○ **방역 수칙 위반**에 대한 **처벌 강화**하여 **1차 위반**은 **경고, 2차 위반**은 **해당 시설**에 대해 **10일**까지 **운영 중단 조치**

□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

<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방역조치 조정방향>

현행 집합금지 시설	조정방향

현행 집합금지 시설	조정방향
유흥시설 5종	▸ 집합금지 유지
홀덤펍	▸ 집합금지 유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* 2단계 수칙은 대부분 4㎡당 1명 이내
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	▸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실내 스탠딩공연장	▸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

○ **유흥시설 5종*** 및 **홀덤펍**은 **불특정 다수**와의 **밀접·밀집 접촉**이 발생하는 점, 유흥시설은 **2단계부터 집합금지**인 점 등을 고려하여 **집합금지 유지**

* 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

○ **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**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**제한적으로 운영 개시**

* 국공립시설 등도 민간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원칙

-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**8**㎡당 **1**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,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

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
- 2단계에서 적용되는 **21**시 이후 운영 중단, 음식 섭취 금지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수칙은 유지
-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 형성·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**5**명부터 금지(입장 및 이용 시 5명부터 금지) 공통 적용

■ **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**

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

시설 신고면적		20평 66.11㎡	30평 99.17㎡	50평 165.28㎡	100평 330.57㎡	200평 661.15㎡	300평 991.73㎡
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	1명/8㎡	8.26명	12.39명	20.66명	41.32명	82.64명	123.96명

<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(안) >

시설	세부 수칙
공통 수칙	▸ 8㎡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▸ 시설 내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▸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▸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·소독

시설	세부 수칙
실내체육시설	▸**(격렬한 GX 프로그램)** 집합금지 * 줌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 등 ▸**(일반)** 샤워실 이용 금지(수영종목 제외) ▸**(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)**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*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
학원	▸**(노래·관악기 교습)** 1:1 교습만 허용, 학생 간 칸막이 설치 시 교실당 학생 4명까지 허용
노래연습장	▸**(일반)**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▸**(코인)**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
실내스탠딩공연장	▸**(일반)** 스탠딩 금지,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 유지

□ 전국 운영제한 시설

○ **(식당·카페) 전국의 카페**는 **2단계 조치**에 따라 **포장·배달만 허용**하였으나, 식당과 동일하게 **매장 내 취식 허용** (전국)

<식당·카페 방역수칙 조정(안) >

○ **21시**까지 **매장 내 착석·취식** 가능

○ **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**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**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** (면적50㎡ 이상)

○ **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**

수도권 방역조치 (’21,1.18~’21,1.31)

※ 붉은색 글씨는 2.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.5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	① 모임·행사
사적 모임	**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** 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기타 모임·행사	**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** ▸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▸전시·박람회,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
	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
공통수칙	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시설 5종	▸집합금지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.5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**▸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**▸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** **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
노래연습장	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거리두기 준수 ▸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,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**▸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1명씩만 이용 가능**
실내 스탠딩공연장	**▸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** **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** **▸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** **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식당·카페(무인카페 포함)	**▸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** **▸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**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▸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▸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홀덤펍	**▸ 집합금지** ▸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▸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집합금지**
실내체육시설	* 줌바, 태보 스피닝, 에어로빅등 **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** **▸ 샤워실 운영 금지(수영종목 제외)** **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* 시설 내에서는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	**▸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** **▸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** **▸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** **▸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** **▸ 스키 강습 등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** **▸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** **▸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** **▸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1명으로 인원 제한**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.5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**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준수 **▸노래·관악기 교습은 1:1 교습만 허용, 교습생 간 칸막이 설치 시 교실당 4명까지 허용** **▸숙박시설 운영 금지** * 사전 PCR 검사 실시 등 별도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 허용
결혼식장	▸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▸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▸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*▸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**
영화관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좌석 한 칸 띄우기
공연장	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좌석 두 칸 띄우기
PC방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독서실·스터디카페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단체룸은 50%로 인원제한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▸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**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** **▸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** **▸집객행사 금지** **▸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**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마트·상점·백화점 (300㎡ 이상)	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	③ 기타 다중이용시설
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	**▸노래·관악기 교습은 1:1 교습만 허용, 학생 간 칸막이 설치 시 교실당 학생 4명까지 허용**
숙박시설	**▸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** **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** **▸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** **▸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권고** **▸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**
파티룸	**▸집합금지**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.5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국공립시설	▸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중단 **▸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** ▸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▸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(최대 5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	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▸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▸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▸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스포츠 관람	▸무관중 경기
등교	▸밀집도 1/3 준수
종교활동	**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10% 이내 인원 참여** 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▸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(인력)은 제외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▸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

인쇄 취소